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부자의 범위 확대 등〉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61호)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4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기부자의 범위 확대 (서삼석, 최은석의원안)	4
2. 민간플랫폼 운영 근거 마련 (서삼석의원안)	12

I. 제안경위

가. 서삼석의원안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3.
3. 회 부 일 : 2024. 7. 24.

나. 최은석의원안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
3. 회 부 일 : 2024. 8.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서삼석의원안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

나. 최은석의원안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법인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법인으로도 확대하되,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도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제8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기부자의 범위 확대 (서삼석, 최은석의원안)

개정안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6조 등).

현행	서삼석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u>사람</u> 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1. ----- ----- ----- ----- ----- ----- ----- <u>사람</u>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	1. ----- ----- ----- ----- ----- ----- ----- <u>사람</u>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으로부터----- -----.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	2. ----- -----	2. ----- -----

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u>사람</u>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u>사람</u>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u>사람</u>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u>사람, 법인</u> <u>또는 단체</u>에----- ----- -----.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 ----- -----<u>사람</u> <u>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u>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 ----- -----<u>사람이나 법인</u> <u>또는 단체</u>에----- -----.	----- ----- ----- ----- ----- ----- -----<u>사람 또는</u> <u>법인</u>에----- -----.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 ----- -----<u>사람</u> <u>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u>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 ----- -----<u>사람 또는 법인</u> <u>에</u>----- -----
---	---	---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 자에게 반환하고, 교 부된 영수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 ----- ----- ----- ----- ----- -----.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 ----- ----- ----- ----- ----- -----.
1. 제4조제1항을 위반 하여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u>주민으로</u> <u>부터</u> 고향사랑 기 부금을 받은 경우	1. ----- ----- --- <u>주민 또는 주된</u> <u>사무소의 소재지가</u> <u>해당 지방자치단체</u> <u>에 있는 법인 또는</u> <u>단체로부터</u> ----- -----	1. ----- ----- --- <u>주민 또는 주된</u> <u>사무소의 소재지가</u> <u>해당 지방자치단체</u> <u>에 있는 법인으로</u> <u>부터</u> ----- -----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 음)	2. ~ 7. (현행과 같 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
법」”이라 함)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

을 확충하고, 답레품 생산·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 첫 해인 2023년 650억원을 모금하였으나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를 허용하여 기부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주체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기부주체>

현행	서삼석의원안	최은석의원안
해당 지자체의 <u>주민이 아닌 사람</u>		
<u><신 설></u>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없는 법인 또는 단체</u>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없는 법인</u>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창생응원세제”를 도입하여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고 있으며²⁾, 기부상한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관련보도 : 한국농어민신문, ““고향사랑기부 대상, 법인까지 확대해야”“, 2023.3.10.

농민신문 ”“고향기부제, 법인 기부 허용해야”“, 2024.9.7.

2) 국회 입법조사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논점, 2017.11.21.

<일본의 고향납세제·지방창생응원세제 현황>

구분	고향납세제도	지방창생응원세제
기부주체	모든 개인	모든 법인
시행시기	2008년	2016년
기부지역	제한없음	동경도 및 3대 도시권 소재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대상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사업 지정 기부	내각부가 승인한 창생사업에만 기부 가능
기부한도	없음	
세제혜택	기부금 중 국세(소득세) 공제*액을 뺀 금액을 지방세(주민세)에서 공제 * 개인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세율에 따라 상이(5~45%)	최대 90%까지 법인 관계세 경감 (단, 법인 주소지에 기부시 추가 세제 혜택 미제공)
2022년 기부액	약 9조원	약 3,040억 원

※ 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법인 또는 단체에까지 확대할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실적을 제고하여³⁾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들은 기부주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

3)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24년 8월말 기준 기부총액은 256억원으로 전년의 92% 수준임.

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법인 또는 단체는 전국적 단위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 또는 단체의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가 이를 준조세로 인식할 우려가 있음.

둘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허용할 경우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 법인 또는 단체의 모금 대상, 세액공제 범위, 기부의 상하한액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일본의 경우 법인이 내각부가 승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창생(蒼生)사업에만 기부가 가능하며,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부의 하한액만 10만엔으로 규정하고 있음.

셋째, 서삼석의원안은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 뿐만 아니라 단체에 대해서도 고향사랑기부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주체의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단체”를 기부주체에 포함할 경우 비법인사단인 사회단체, 종교단체, 친목단체는 물론이고 정당⁴⁾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참여 허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도입 과정에서 이행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기부강요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한 세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법인의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감면 혜택 제공 부담이 발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제21대 국회 당시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지가 아닌 곳에 사무소를 둔 법인을 기부주체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⁵⁾이 발의되었으나, 법인이 개인과 달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준조세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음⁶⁾⁷⁾.

4) 헌법재판소는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음. (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28)

5) 의안번호 2101553,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3026,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6) 제382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09.21.) 회의록 p32

7)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준조세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나, 최종 심사 결과 개인에게만 기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

(제38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1.02.25.) 회의록 pp16-19,
제38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1.06.24.) 회의록, p11)

2. 민간플랫폼 운영 근거 마련 (서삼석의원안)

서삼석의원안은 ①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②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등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플랫폼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서삼석의원안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u>정보시스템</u> 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 ----- ----- <u>정보시스템</u>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u>사람</u> (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 ----- <u>자</u> ----- -----.
③ <u>개인별</u>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③ <u>기부자별</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청사 그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구분	접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②	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을 통한 전자결제 · 신용카드 · 전자자금이체
③	지자체의 청사 그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또한, 동법 제12조는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 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업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게 위탁되었으며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그런데, ‘고향사랑 e음’에 대해 이용이 불편하여 기부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⁹⁾으로 인하여, 민간플랫폼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¹⁰⁾.

8)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9) 관련보도 : “고향기부 열기 찬물 끼얹은 ‘고향e음’”, 농민신문, 2023.12.13.

“지방재정 확충, 잦은 오류 불편… 고향사랑기부제 1년 ‘빛과 그림자’”, 서울신문, 2024.01.10.

“올해만 3번째 고향사랑e음 전산장에 발생”, 내일신문, 2024.03.15.

10) 관련보도 : ““고향기부제 제도 활성화 위해 민간 플랫폼 길 열어줘야””, 농민신문, 2024.02.26.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선 민간 위탁제 도입 필요“, 대전일보, 2024.08.08.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향사랑 e음’ 이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플랫폼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플랫폼을 도입하여 기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플랫폼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재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고시에 따라¹¹⁾ ‘고향사랑 e음’을 전제로 하되 일부 기능을 민간플랫폼에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민간플랫폼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민간플랫폼 활용을 통한 기부자의 편의성 증대 여부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향사랑

11)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고시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 e음을 전제로 하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답례품 제공 등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24.12월)할 예정임. (관련 조문은 참고자료 참조)

e음'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기부 수요 대처 가능성, 민간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수료 등 제반 비용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민간플랫폼 이용 따라 민간업체에 일정한 수수료¹²⁾를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주소지, 기부상한액 등 공공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이 필요한 법적 요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민간플랫폼의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21대 국회 당시에 도 논의되었는데, 일본과 같이 민간플랫폼 규제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 민간플랫폼을 도입할 경우 홍보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 구축비용,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고향사랑 e음'시스템을 고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¹³⁾.

둘째, 민간플랫폼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민간 기업의 책임있는 운영,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의무 및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로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

12)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간 협약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결정되며 대체적으로 10~15% 수준임.

13)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3.11.15.) 회의록 pp22-26

한 법률」은 행정기관이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동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모금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간플랫폼 도입 및 활성화 근거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의무와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1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 등) ①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0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7.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전자정부법」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1.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방법
2.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활용 방법,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7조(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 또는 서비스 구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민간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1.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2. 새로운 서비스의 국민 편의성 또는 행정 효율성
3. 새로운 서비스의 기술적 난이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중앙행정기관등이 민간서비스를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